

북 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1080호 2022. 5. 6. (금)

공 포

규칙 제970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---2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5월 6일
부산광역시 북구청장

◎부산광역시북구규칙제970호

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부설 상가”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내 지상1층, 지상3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점포가 늘어진 구역과 화장실,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.
2. “점포”란 부설 상가의 일부로서 사용·수익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사용인”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후 부설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칙은 「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폐업상인 또는 폐업상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한 자에게 적용한다.

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지원사항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제4조(우선 입점대상) 구청장은 부설 상가의 최초 입점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업상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 중 영업을 권한을 승계한 자 1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 ① 점포를 사용·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사용·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기능과 점포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, 시설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,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4조의 사용·수익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용·수익허가 기간) ① 점포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제4조의 의한 사용인은 5년 단위로 2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사용인은 사용·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

제7조(권리의 양도 제한 등) ① 사용인은 점포를 포함하여 이 규칙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잔여기간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제·개정(폐지) 이유

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(2019년도 4월 10일 시행)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■ 주요내용

- 가. 시행규칙의 목적과 정의,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
- 나. 부설상가의 우선 입점대상에 대한 사항
- 다. 사용수익허가의 방법, 기간에 대한 사항
- 라. 권리의 양도 제한, 운영세칙에 대한 사항